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 전진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52호)
- 이수진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58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3

I. 개요

1. 전진속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5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전진속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27.
- (3) 회 부 일 : 2025. 2.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위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의 3차 경험자인 자원봉사자와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데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과 자원봉사, 언론인을 명시하여, 심리지원이 두텁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2.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58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4인
- (2) 제 안 일 : 2025. 2. 28.
- (3) 회 부 일 : 2025. 3. 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이하 “심리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범주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참사와 같은 대형참사 현장에서 다양한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 등을 지원하는 데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장대응업무에 수습, 조사 및 자원봉사를 명시하여, 이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심리적 안정 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II. 검토 의견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 전진숙의원안, 이수진의원안은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수습, 자원봉사, 취재, 조사의 형태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1항제2호).

현행	전진숙의원안	이수진의원안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 ----- ----- ----- ----- -----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u>치료</u> 등 현장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	2. ----- ----- <u>치료, 수습, 자원봉</u> <u>사, 취재</u> -----	2. ----- ----- <u>치료, 수습, 조사,</u> <u>자원봉사</u> -----

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 -----	----- -----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뿐 아니라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제공하는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¹⁾,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음.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위기대응팀 및 회복지원팀 등 5개의 팀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공무원 16인 및 정신건강전문요원²⁾ 등 공무원 33인을 포함하여 49인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②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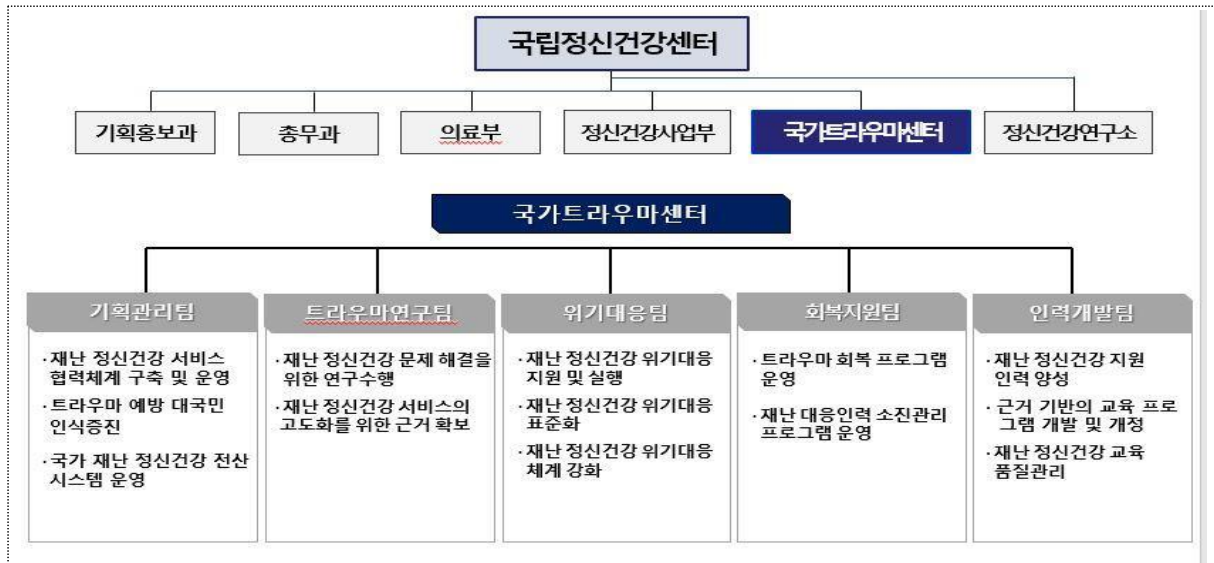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직도>



*자료: 보건복지부

□ 전진숙의원안과 이수진의원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로서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수습, 자원봉사, 취재, 조사의 형태로서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이들 또한 현행법에서 지원대상자로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구조, 복구, 치료등의 현장대응업무 수행자처럼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들을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에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지원대상자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적 측면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유사한 취지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제2207579호)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향후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재난 현장에서 수습, 자원봉사, 취재, 조사를 위하여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도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별 대상자들을 열거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트라우마 관련하여 상담 업무를 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직원들의 트라우마에 대하여도 배려할 필요가 있음. ○심리지원 서비스를 국가트라우마센터만 제공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비스 제공원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하는 대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장대응인력의 구성이 훨씬 다양함을 고려하여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